

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



제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재 대상

아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 현장

총 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

건설업 본사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2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

공사금액 산정 방법

사업장 단위인 공사현장별 공사금액으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가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총 공사금액에 포함됩니다.

분리발주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각 공종별 시공사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되므로, 총공사금액은 각 시공사별로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공종별 시공사가 협의하여 공사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1. 크기

-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2. 위치

- 근로자 이용에 편리하고 가까운 곳. 공동휴게시설은 왕복 이동 소요시간이 휴식시간 20% 이내 위치
- 다음 모든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함 : ① 화재·폭발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 ③ 분진 또는 소음 노출

3. 온도

냉난방 기능 (적정한 온도 18°C ~ 28°C)

4. 습도

습도 조절기능 (적정한 습도 50% ~ 55%)

5. 조명

조명 조절 기능 (적정한 밝기 100럭스~200럭스)

6.

창문 등 환기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8.

마실 수 있는 물 또는 식수설비

9.

외부에 휴게시설 표지 부착

10.

청소·관리 등 담당자 지정

11.

목적 외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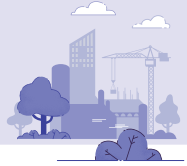
※ 비교

가

사업장 전용 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1호 크기, 제2호 위치 기준 적용하지 않음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3호부터 제6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Q.1 건설공사에서 휴게시설 설치 시기는 언제이고, 휴게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을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현장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종료 시까지 휴게시설을 유지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2 건설공사에서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원도급사에게 있는 것인지?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가 제재대상이 됨

Q.3 건설현장의 사무실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사무실 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Q.4 건설공사에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란?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라면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3호(온도)부터 제6호(환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작업, 가로수 정비 작업 등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고정형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Q.5 건설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 따라서 도급인이 설치한 휴게시설을 수급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Q.6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을 휴게시설로 사용해도 되는지?

휴게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 다만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워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교육장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휴게시설로 설치·운영이 가능함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의 휴게시설 설치 A to Z 해설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해설가이드 다운로드 가능)

해설가이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1.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게시'(2022.9.5.)